파주시공고 제2022-331호

파주시 창업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

「파주시 창업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「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2월 11일

파 주 시 장

1. 자치법규명: 파주시 창업 지원 조례

2. 제정이유

ㅇ창업자의 창업활동을 촉진하여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항 등의 규정을 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나.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(안 제5조)
라. 창업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마.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7조)
바.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8조)
사. 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9조)
아.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0조)
자.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
차.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에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3조~제17조)
카.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8조)
타. 표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9조)
파. 시행 규칙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20조)

4. 자치법규안 : 파주시 홈페이지(http://www.paju.go.kr) 입법예고에 전문 게시

5. 의견제출

가. 제출기일 : 2022년 3월 3일까지(20일간)

나. 제출방법 : 서면·우편·팩스 등

- 자치법규정보시스템(http://www.elis.go.kr) '입법예고'란에 의견쓰기 이용 가능

다. 기재내용 : 성명·주소·연락처·의견

라. 제출기관 : 파주시장(도시재생과 상권재생팀)

○ 주소 :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, 도시재생과(우 10930)

○ 전화 : 031-940-8466 / 팩스 031-940-4639 / 이메일 promisedu@korea.kr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파주시 창업 지원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　　소 :

○ 생 년 월 일 :

○ 전 화 번 호 :

제정안 내용	의　　견	비 고

➡ 민원인 편의고려, 임의서식임(의견제출 관련 정해진 서식은 없으며 필수 기재내용작성 후, 자유롭게 제출)